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85
----------	------

발의연월일 : 2017. 4. 11.

발의자 : 김삼화 · 김관영 · 김수민
김종회 · 김경진 · 장정숙
정춘숙 · 황주홍 · 최도자
오세정 · 박준영 · 정인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의 하나로 인터넷신문을 규정하면서 주로 정치 · 경제 · 사회에 관한 보도 ·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성광고물 수가 2013년에 791개, 2014년에 1,021개, 그리고 2015년에는 1,5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대부분 정치 · 경제 · 사회에 관한 보도 ·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매체물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신문이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만을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을 통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사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사목 중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을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u>의2에 따라 청소년보호책</u> <u>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u> <u>는 신문은 제외한다)-----</u></p> <p>-----</p> <p>아. ~ 카. (생 략)</p> <p>3. ~ 8. (생 략)</p>
	<p>아. ~ 카. (현행과 같음)</p> <p>3. ~ 8. (현행과 같음)</p>